

의안번호	제 241 호
의 결 연 월 일	2008년 월 일 (제 271 회)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08년 6 월 10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8년 6월 10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,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 지침을 반영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조정 : **2,685명 → 2,668명(△17)**
 - 집행기관의 정원 : 1,494명 → 1,426명(△68)
 -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: 1,077 명 → 1,130명 (+53)
 -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: 44명 → 42명(△2)
- 직종별 · 직급별 정원조정 : **감17명**
 - 일반직(△48) : 3급 △1, 4급 △1, 5급 △10, 6급 △16, 7급 △17, 8급 △3
 - 별정직(△1) : 6급 △1
 - 연구직(△6) : 연구관 △1, 연구사 △5
 - 지도직(△1) : 지도사 △1
 - 소방직(+53) : 소방령 +1, 소방경 +6, 소방위 +9, 소방장 +9, 소방교 +12, 소방사 +16
 - 교 원(△2) : 교수 · 부교수 · 조교수 · 전임강사 △2
 - 기능직(△12) : 8급 △2, 9급 △4, 10급 △6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,668명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 : 1,426명
2.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: 1,130명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: 42명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70명

제3조(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의 규정) 본청·의회사무처·직속기관·사업소의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고, 그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규정)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[별표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

직종별	기관별	합계	본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사업소
총정원		2,668	994	70	1,352	252
정무직(도지사)		1	1			
일반직	소계	1,051	819	44	61	127
	2-3급	1		1		
	3급	8	7		1	
	3-4급	1	1			
	4급	59	42	7	4	6
	5급	211	174	10	11	16
	6급	357	283	14	18	42
	7급	359	273	12	23	51
	8급	54	38		4	12
	9급	1	1			
별정직	소계	21	13	3	4	1
	1급	1	1			
	5급	4	3	1		
	6급	10	4	1	4	1
	7급	3	3			
	8급	2	1	1		
연구직	소계	136	2		105	29
	연구관	20			17	3
	연구사	116	2		88	26
지도직	소계	24			24	
	지도관	6			6	
	지도사	18			18	
소방직	소계	1,130	68		1,062	
	소방정	10	2		8	
	소방령	30	10		20	
	소방경	65	5		60	
	소방위	82	10		72	
	소방장	157	12		145	
	소방교	345	25		320	
	소방사	441	4		437	
교원	소계	42			42	
	학장	1			1	
	교수·부교수· 조교수전임강사	30			30	
	조교	11			11	
기능직	소계	263	91	23	54	95
	6급	11	8	1	1	1
	7급	30	10	4	4	12
	8급	49	15	1	4	29
	9급	83	23	7	28	25
	10급	90	35	10	17	28

관계법령 발췌

【지방자치법】

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③~⑥ (생략)

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
2. 본청·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
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
5.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~⑤(생략)

비 용 소 요 추 계 서

1.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○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

2.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

○ 정원의 총수 : 2,685명 ⇒ 2,668명(감17)

- 일반직(△48) : 3급△1, 4급△1, 5급△10, 6급△16, 7급△17, 8급△3

- 별정직(△1) : 6급△1

- 연구직(△6) : 연구관△1, 연구사△5

- 지도직(△1) : 지도사△1

- 소방직(+53) : 소방령 +1, 소방경 +6, 소방위 +9,
소방장 +9, 소방교 +12, 소방사 +16

- 교 원(△2) : 교수·부교수·조교수·전임강사 △2

- 기능직(△12) : 8급△2, 9급△4, 10급△6

3. 비용소요 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(예산과목)	소요비용	산 출 근 거
총 계	△ 1,028,762	
○ 인건비	△ 892,019	
- 기본급	△ 404,279	※ 2008년도 예산편성지침 적용 ○ 일반직 - 3급(△1명) : 20호봉 기준 - 4급(△1명) : 20호봉 기준 - 5급(△10명) : 18호봉 기준 - 6급(△16명) : 18호봉 기준 - 7급(△17명) : 15호봉 기준 - 8급(△3명) : 12호봉 기준 ○ 별정직 - 6급(△1명) : 18호봉 기준 ○ 연구직 - 연구관(△1명) : 15호봉 기준 - 연구사(△5명) : 16호봉 기준 ○ 지도직 - 지도사(△1명) : 16호봉 기준 ○ 소방직 - 소방령(증1명) : 18호봉 기준 - 소방경(증6명) : 17호봉 기준 - 소방위(증9명) : 17호봉 기준 - 소방장(증9명) : 15호봉 기준 - 소방교(증12명) : 12호봉 기준 - 소방사(증16명) : 10명호봉 기준 ○ 교원(△2명) - 교수·부교수·조교수·전임강사 : 15호봉 기준 ○ 기능직 - 8급(△2명) : 12호봉 기준 - 9급(△4명) : 10호봉 기준 - 10급(△6명) : 10호봉 기준
- 수 당	△ 229,448	
- 정액급식비	△ 21,060	
- 교통보조비	△ 23,100	
- 명절휴가비	△ 80,852	
- 가계지원비	△ 88,365	
- 연가보상비	△ 44,915	
- 기타직보수		
- 일용인부임		
○ 물건비	210	
- 기관운영업무추진비		
- 부서운영업무추진비		
- 정원가산업무추진비		
- 직책급업무추진비		
- 직급보조비	△ 36,150	
- 특정업무수행활동비	36,360	
○ 이전경비	△ 136,953	
- 성과상여금	△ 25,367	
- 연금부담금	△ 92,327	
- 국민건강보험금	△ 19,259	
- 연금지급금	-	